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의2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별지 제18호”를 “별지 제13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별표 1 비고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비고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다목(종전의 나목) 전단 중 “제2호”를 “제3호”로, “각각 그”를 “그”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를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3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과 제15호 서식, 제18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u></p> <p>① 공무원은 업무 처리 중 직무 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p> <p>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p>	<u><삭 제></u>

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

무수행에 어려운 관계가 있다
고 정한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
속 기관의 장에게 제5항 각 호
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
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
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
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
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
유를 소명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에게 제5항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정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 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 · 점검하도록 하여
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
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
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
우

(7)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
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 · 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
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 공직자”라 한
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
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
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위원장(위원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
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삭 제>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2.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교육감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 · 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의3(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 자문을 제공하

<삭 제>

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관련 행위
- ②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

<삭 제>

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

<삭 제>

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

<삭 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적 접촉 행위를 하는 경우에
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
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
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
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
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
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
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
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

<삭 제>

선박 ·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
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
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 2. (생략)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
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
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
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
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 • 2. (현행과 같음)

3. 전가(轉嫁)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 단체에 공
무원 -----

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
----- 제4호 각 목의 -----
----- 단체-----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 4.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
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5)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
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
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② (생 략)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
8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
용을 행정인사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13
호 -----

-----.

④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3.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신 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 ·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

-----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 ·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

----- 경우에는 -----

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생략)

-----. -----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

라. (현행 다목과 같음)